



'90년 제4차 이사회 개최 계군혈청검사 사업소 설치키로



본회 '90년 제4차 이사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3차 이사회 회의록 요약보고와 협회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이어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부의안건에는 '90년 수지예산 추가 경정(안) △ 계군혈청검사 사업소 설치 및 운영계획(안) △ 제1회 한국양계산업박람회 개최건 △ 분회 설치 승인(안) △ UR농산물 협상과 양계산업 대책 방안 △ 양계산업발전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건 등

이다.

계군혈청검사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분회내에 사업소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1차년도인 '91년도에는 실험기자재 및 기구 일부를 설치하고, 2차년도에 필요 기자재를 모두 갖추며, 이후 사업을 점차 확대키로 했다. 실험기자재 및 기구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총당하며, 사업소 운영제비(인건비, 여비, 차량비, 일반관리비)는 본회 자금으로 총당할 계획이다.

혈청검사는 등록된 모든 종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수수를 대상으로 하여 검사요원이 3개월에 1회씩 정기적으로 혈청을 채취하여 검사키로 했다. 검사대상 질병은 추백리, 만성호흡기병, 뉴캣슬병, 산란저하증 '76, 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 F낭병 등이다.

제1회 한국양계산업 박람회는 '91년 중 개최키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양계산업발전 특별대책위원회는 구성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책위원 인선은 회장단에게 일임했다.

화성육계분회와 당진육계분회 가입 승인을 하는데 화성육계분회(분회장 김경렬)는 경기도 화성군 일원에서 육계업을 하고 있는 육계업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진육계분회(분회장 김종길)는 당진군을 기점으로 하는 육계업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000㎡이하 집하장, 신고로 농지 전용가능

농어민 공동생활 편익시설에 해당

본회의 지난 11월 17일 계란집하장 설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농림수산부는 3,000㎡ 이하에서는 집하장이 농어민 공동생활 편익시설에 해당되어 신고로서 농지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농림수산부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선정 추진은 시장 군수가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도정 조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지정고시도록 운영하고 있는 바 농공단지 입주는 해당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물의 집하장 시설은 농업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3,000m²이하의 농어민 공동생활 편익을 위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마을창고 등 마을 공동시설을 신고로서 농지전용이 가능하며 대체농지 조성비로 면제 됩니다.

양계장 계분건조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인정 농발법에 의해 양축시설 범위에 해당

본회가 지난 7월 2일 농림수산부와 환경처에 건의한 양계장에 설치하는 계분건조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인정해 달라는 건에 대해 농림수산부는 축산폐수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인정 조치했다는 회신을 하였다.

농림수산부의 회신내용은 축사, 계사 등 양축시설에 필수적으로 부대하여 설치하는 축산폐수 처리 시설(가축분뇨 정화, 건조, 발효시설 등)은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제1호의 농업용시설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의 양축시설 범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90. 2차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 개최 민경두 감별사 경진대회 최우수상

'90년 제2차 전국 초생추감별사 자격시험 및 경진



대회가 지난 11월 30일 강남병아리감별학원에서 개최되었다.

갑종감별사에 74명, 고등감별사에 5명이 응시하여 갑종감별사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고등감별사는 자격증 취득자 없이 산란계분야만 2명이 합격하였다.

기성 감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에 민경두(민경두병아리감별학원), 우수상에 박영주(한일농원), 장려상에 하경미(부산병아리감별학원)씨가 차지했다.

갑종감별사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의성, 박연희, 김순근, 이혜경, 김현정, 장경철, 이성철, 이희영, 현민숙, 유용준, 정현상, 윤기복, 박수영, 김병준, 강성모, 이석열, 김용례, 조금혁, 신상일, 송기언, 이순옥, 오홍진, 양만철, 최백근, 김경철.

무어분산란사료 실용화 협조요청 농촌진흥청에 제도적 조치 의뢰

본회는 지난 3일 농촌진흥청에 새로 개발한 무어분산란사료를 실용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무어분산란사료가 기존 어분첨가 배합사료에 비해 기호성과 산란능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유리해 양계농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국제화시대에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인 현실에서 새로이 개발된 무어분산란사료의 좋은 연구결과가 생산비 절감이 최우선 과제인 업계에 신속하게 실용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연구결과가 조속히 업계에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90. 제4차 검정위원회 개최 제23회 산란계검정 최종성적 검토



'90년 제4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봉국)가 지난 28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24회 산란계검정 중간성적과 제30회 육용계검정 중간성적 검토가 있었다. 또 제23회 산란계검정 최종성적 검토가 있었다.

농지전용·산림훼손허가후 축사설치 위한 개발행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본회는 지난 7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양계와 관련된 사항을 건설부에 질의하였다.

본회 질의와 건설부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회 질의내용

가. 국토 이용 관리법상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 지역 안에서 축사의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 등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국토 이용 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 지역(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 또는 자연녹지)안에서 축사의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았을 때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전기 “가” 내지 “나”호 질의 사항의 축사 설치를 위한 행위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 만약 부과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거부터 부지(축사 및 부대시설용 토지)를 임의전용(불법전용)하여 기위 축사 및 부대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 전용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양성화 방침(농림수산부 88.11.22자 농지 27210-2039 및 90.10.27자 농지 27210-1858의 농지 불법전용실태 및 조치방안 등)에 의거 양성화된 토지(허가추인)는 행정절차에 대한 요식행위를 갖추었을 뿐이고 과거 수년전에 이미 개발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은 이후의 개발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아 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금이 생기지 않음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결여하?

○건설부 회신내용

가.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 등에서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경우와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축사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니나, 취락지역, 개발촉진지역, 공

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에서 동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신고를 통하여 개발을 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

나.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가항의 기준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91년도 육계경기 침체 전망



12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강석부)가 지난 21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말 육계경기에 대한 분석이 있었으며 또한 '91년초 육계경기는 예상하고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것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계열화 붐을 타고 위탁사육이 증가하면서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위탁사육 주체들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양계와 무관한 사람이 몇몇 양계농가와 투기적으로 위탁사육을 함으로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생산자들이 직접 계열주체가 됨으로써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따라서 생산자 계열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91년 상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키로 합의하였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전국계우회연합회 정기총회 겸해

12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최준구)가 전국계우회연합회 총회를 겸해 지난 14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91년도 사업계획 심의가 있었는데 △ 국내 우수농장, 해외시찰 △ 채란인 단합대회 △ 전문(자문)위원회 △ 각 지역 계우회 방문 등을 결정하였다.

한편, 하락되고 있는 계란가격에 대해 두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첫째는 현재 난가가 2중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니 현실화하자는 입장과 현재의 난가를 계속 유지시켜 보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중 첫번째 입장은 기준가격과 농장 수취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자칫 고질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화할 경우 상인들의 농간에 의해 계란가격 하락만 부채질할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후장기는 절대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고 후장기를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의도적으로 부도낸 계란도매상 응징 전남지부에서 강력한 대응으로 구속

본회 전남지부는 양계업자를 기만하는 방법으로 의도적 각본에 의해 양계업자의 거래미수금을 편취하려는 계란도매상인을 구속케하였다.

전남, 광주지역에서 계란도매업을 해온 도매상인이 전남지부 회원 6명의 1개월분의 미수금 1억1천만 원을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고 편취하였다 지난 11월 28일 구속되었다. 이처럼 구속되기까지는 전남지부의 회원 보호와 봉사라는 사명의식의 발로로 안명수 지부장의 끈질긴 의지로 이루어졌다.

구속 결과를 양계업자는 물론 건전한 상인들까지

반기고 있다. 또 구속상인 가족들이 화해를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회 이천육계분회 정기총회 개최 신임 분회장에 엄재국씨 선출

본회 이천육계분회(분회장 김동재)는 지난 12월8일 분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임원개선이 있었는데 신임 분회장에 엄재국, 부문회장 이을윤, 총무 김상해, 감사에 김동재, 윤동선씨가 각각 선출되어 '91년도 분회 운영을 맡게 되었다.

당진육계분회 현판식 거행 12월 14일 분회 사무실에서



당진육계분회(분회장 김종길) 현판식이 지난 14일 분회 사무실에서 거행되었다. 현판식에는 강석부 부회장을 비롯하여 권태웅, 유길동, 임영춘 이사와 이규성 전무가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다.

당진육계분회는 당진군 일대의 회원 25명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당진육계분회의 특징은 계열화업체와 계약사육을 하는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계열화사업에 계약사육농가 조직의 역할이 기대된다.

본회 대의원 207명 확정 '93년 2월까지 임기

'93년 2월까지 임기인 본회 대의원 207명이 확정되었다. 대의원은 각소속별 대의원 79명과 임원 34명, 종계분과 26명, 채란분과 29명, 육계분과 20명, 감별분과 10명, 특별회원 8명, 단체회원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수에 비례해서 선발되었다.

대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90. 2—93. 2월까지 대의원 명단

소 속	성 명	선출구분	업종
본회	곽인신	서울, 경기지역	종계
	김남수	"	"
	정완영	"	종계
	정태원	"	채란
	박기홍	"	종계
	송유돈	"	"
	송상정	"	채란
	최병현	"	종계
	윤용구	"	육계
	김근부	충북지역	종계
	김경태	충남지역	"
	정동명	"	육계
	한익교	"	종계
부산, 경남지부	김중경	지부대의원	채란
	김성봉	"	육계
	이환생	"	"
	김성준	"	"
	이상정	"	"
	정재환	"	"
	강병호	"	"
경북지부	박종호	"	채란
	신종철	"	"
	이인호	"	"
	조동필	"	"

소속	성명	선출구분	업종	소속	성명	선출구분	업종
전남지부	박윤수	지부대의원	육계	전호분회	김종규	분회대의원	육계
	김동식	"	채란		황석규	"	채란
	강차남	"	"		오근성	"	"
	박정열	"	"		최명훈	"	"
	김종선	"	"		정재석	"	"
	김영주	"	"		한상오	"	"
	양완희	"	육계		이우삼	"	"
	박옥룡	"	채란		이광식	"	"
	이기동	"	"		이해성	"	"
	이병걸	"	"		윤길현	"	"
전북지부	양영수	"	"	김포육계분회	고상현	"	"
	김철한	"	"		김양옥	"	"
	백홍파	"	육계		임성진	"	"
	김기석	"	채란		양기원	"	"
	이근성	"	"		이재린	"	"
제주지부	고경무	"	"	포천육계분회	유재규	"	"
	박한희	"	"		정인혁	"	"
	김동만	분회대의원	육계		임원	신홍종	당연직
	윤영빈	"	"			이재식	"
광주채란분회	이영재	"	채란			강석부	"
	이설재	"	"			이상윤	"
	이강만	"	"			배성황	"
김포채란분회	김학문	"	"			이순오	"
	김경삼	"	"			한순	"
	정규석	"	"			이학복	"
동두천분회	최두훈	"	육계	광주분회		김현	"
	심훈택	"	육계			허돈	"
수원분회	구본영	"	채란			심준식	"
	유근하	"	육계			최준구	"
안성분회	최병렬	"	"			윤형수	"
	용인분회	최진호	"			전명훈	"
" 배용은	"	"	"			김재철	"
	원주분회	김상봉	"			강신구	"
이천육계분회	정재구	"	채란			이종선	"
	성창규	"	육계			송윤식	"
이천채란분회	정창영	"	채란			김광운	"
	오무남	"	"			장민기	"
천안육계분회	신응균	"	육계			권태웅	"

소속	성명	선출구분	업종	소속	성명	선출구분	업종
임원	정용길	당연직	육계	종계분과 채란분과	류종래	당연직	종계
	원승재	"	"		김상길	"	채란
	김중설	"	"		박동원	"	"
	김풍림	"	"		강현도	"	"
	임영춘	"	"		송복근	"	"
	유길동	"	"		정광면	"	"
	손종현	"	종계		김종수	"	"
	박해탁	"	채란		최정규	"	"
	안명수	"	"		전상열	"	"
	홍용완	"	"		김경렬	"	"
	현정희	"	"		이인수	"	"
	이종길	"	육계		이신규	"	"
	김덕현	"	채란		김충리	"	"
	이종근	"	종계		임진관	"	"
	송인환	"	"		최승수	"	"
	이계욱	"	"		박승봉	"	"
	유남열	"	"		유홍복	"	"
	박수남	"	"		백의현	"	"
	박준영	"	"		이석훈	"	"
	배선채	"	"		곽인기	"	"
	이전남	"	"		이현진	"	"
	김인영	"	"		최정수	"	"
	이병우	"	"		박배현	"	"
	김영환	"	"		김윤득	"	"
	주양수	"	"		배수명	"	"
	김진영	"	"		천용수	"	"
	이종운	"	"		양남석	"	"
	정석택	"	"		박성환	"	"
	천일만	"	"		장관섭	"	"
	이건일	"	"		김화준	"	"
	남광풍	"	"		이상정	"	육계
	김교석	"	"		허경희	"	"
	안승식	"	"		김종철	"	"
	한재권	"	"		최진우	"	"
	이종현	"	"		이준상	"	"
	임병묵	"	"		임재국	"	"
	최규의	"	"		안효택	"	"
	최태환	"	"		최종필	"	"
육계분과							

소 속	성 명	선출구분	업종
육계분과	우상천	당연직	육계
	원용주	"	"
	김동재	"	"
	정병해	"	"
	강용식	"	"
	박호귀	"	"
	민해근	"	"
	김복천	"	"
	도종호	"	"
	이만희	"	"
	박원모	"	"
	소기섭	"	"
	박종환	"	감별
	김수환	"	"
감별분과	민경두	"	"
	강채원	"	"
	하경미	"	"
	최종엽	"	"
	정연석	"	"
	고정립	"	"
	이재형	"	"
	임병선	"	"
	윤상원	"	"
	이재근	"	"
	오봉국	"	"
	오세정	"	"
	정선부	"	"
	박근식	"	"
본회 (특별회원)	김춘수	"	"
	김선중	"	"
	백의현	"	"
단체회원			

한국 마사회 체육청소년부로 이관 확정

정치권 불신감 확산

축산인들이 결사반대해 온 한국마사회의 체육부 이관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 함으로써 이관이 확정되었다. 또 이관계획에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을 국무회의에서 문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축가들은 정치권의 알력과 이권에 의해서 축산업이 농락당하고 있다고 분노하며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한계점에 와 있다. 더구나 축산을 위해 소신껏 일해왔던 담당국장 문책까지 거론되어 앞북치고 뒷북치는 정부의 처사에 분노는 더 가중되고 있다. 또 휴지처럼 내팽개침을 당하는 축산정책에 축산인의 자존심과 사기는 극히 저하되고 있다.

또 소신껏 일하는 축산정책 책임자가 문책을 당한다면 앞으로 축산정책은 무사안일에 빠지게 될 우려가 있어 축산정책 부재현상까지 과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인들은 정부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축산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때는 실력행사하기로 했다.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최후 저지선인 국회에 철회요청을 청원하였으나 정치적 약합에 의해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 원 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오며 건승을 뵙습니다.

농축산업은 지구상의 지역별 위도권에 있는 자연의 부존자존을 활용, 인간의 활동에 필수 “에너지”의 공급 원인 식량을 생산공급하는 인류존망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타산업과 대체가 불가능한 중요한 산업으로서 특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

히 축산업은 쇠고기등 육류, 우유, 계란과 같은 축산식 품을 생산하여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을 함양 증진하는 데 공헌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영원히 그 역할을 담당 하여야 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현실적인 성장 산업입니다.

최근 U.R 협상에 있어서 시장 개방문제는 우리 농축 산 농가들에게 불안을 안겨 주고 있으며, 이는 우리 농 축산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합심하여 타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국민적 과제로서 국토의 경관관리 와 농토보존을 숙명적인 채무로 밀고 있는 우리 농축산 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배가 할 수 있도록 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원래 경마의 역사적인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목마 장의 마주들이 말의 혈통, 외모, 능력의 기록을 기준으로 경마에 순회출장 경주케하여 작성되는 말 개체의 우열과 특성의 경주마 성적을 참고로 마주들이 우량한 종 마를 선발하여 번식에 공여하는 말의 개량증식의 수단입니다.

2. 영국의 “더비”(Derby) 경마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말이 출생하면 혈통등록을 하고 3세되는 봄에 같은 조건으로 등록한 다른 말들과 함께 경마에 처녀출장하여 경주능력을 비교검정하는 경마로서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경마방식인데 말의 경주능력의 개량향상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더비” 경마에서 우승한 말은 물론이고 그 말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마주들의 가격이 최고가 또는 상당한 고가로 매매되므로 목마장의 마주들의 수입증대와 말의 개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경마는 말과 기수가 함께 말의 성능중 경주능력을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출장마들을 조를 편성하여 일정한 거리를 달리게 하여 선착순으로 우승하는 말에게 상을 주는 중요한 말의 개량증식사업의 일환입니다.

4. 기수는 성별, 연령, 체중, 시력 등 신체검사에 합격한 지원자들을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이수케하고 다시 학술, 실기, 체력검사와 같은 수험과목에 의한 기수면허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기수면허증을 수여하는 제도이고 기수자격을 얻은, 기수는 말의 경주능력을 검정하는 경마요원이며, 자동차 운전수와 같은 직능

인일뿐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5. 경마장은 말의 성별, 연령, 부담중량, 거리, 마장 조건, 경주전개와 같은 요인에 따라 경주능력을 비교검정하여 우수한 경주마를 선별하는 말의 경주를 목적으로 건설한 시설로서 사람의 체육 경기장이 아닙니다.

6. 마권은 말의 경주마 조별로 판매하는 번호를 기입한 승마투표권이며, 마권을 산 경마군중에게 경기후 승마 예상마가 적중하면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마권 판매대금 중 마사회 수입금은 말의 경주능력에 대한 마권의 판매대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의 개량증식과 축산진흥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물론이요 세계적 통례입니다.

그러므로 경마는 사람의 체육이 될 수 없으며 단순한 오락이나 레저도 아닙니다.

7. 세계적으로 체육으로 인정하는 승마와 승마기술인, 마장마술, 장애물 비월경기는 선진국에 있어서도 특수종의 승마운동과 운동선수의 마술경기이며,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경마는 말의 경주능력을 비교하는 말의 경주이므로 엄연히 구분되어 있으며 경마는 말의 경주요 승마는 사람의 운동이기에 승마는 사람의 체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마는 가축인 말의 경주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마는 사람의 체육이 아닙니다.

8. 경마를 경정, 경운과 동일시하는 것은 승마와 경마를 구분하지 못하는 체육부의 억설로서 부당한 간섭이며, 승마와 승마기술인 마장마술·장애물 비월경기는 경정·경륜과 같이 사람들의 운동이나, 경마는 마필을 생산하는 목마장에서 번식되는 말이라는 가축의 경주이므로 경정에서 선박의 제조업, 해상 교통운송의 행정 및 경운에서 자전거의 제조업, 육상 교통행정, 선박류와 각종 자전거의 품질향상 업무 등이 체육부의 소관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경마라는 말의 생산개량증식, 경주능력향상을 위한 행정업무가 체육부의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9. 말은 축산업의 가축이요 경마는 선진외국에서 발달한 말 자체의 능력을 검정하는 말의 경주이기 때문에 농축산업의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수산부의 소관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이운이 있을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경마를 체육이라고 하여 체육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10. 마학의 교육은 농과대학의 축산학과 교과목이요, 체육대학의 소관은 아닙니다.

11. 정부는 한국마사회 수입금의 58%를 축산진흥과 농어촌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89.6월 제158회 임시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한국마사회법을 개정, '89.

8.1. 법률 등 4251호로 공포, 현재 동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 공포 불과 2개월 만에 한국마사회 수익금을 체육진흥을 위해 사용코자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을 현재의 농림수산부에서 체육부로 이관키로 결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정부 스스로 저지른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소행일 뿐만 아니라 법개정에 따라 마사회 수입금의 농촌 지원을 기대하고 있던 양축농가의 기대를 배신하는 정부의 고만입니다.

12. 정부는 한국마사회의 체육부로 이관방침을 발표하면서 행정업무의 비효율적인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한국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 법인체로서 한국마사회의 관장기관 문제는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며, 관장기관 조정이 필요하다면

① 경마의 체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② 경마수입금을 사회의 어느 분야에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사연구 검토되어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국민의 의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능률성 제고를 위한 부처간 기능조정 내용에 포함시켜 총무처가 독자적으로 정부방침을 결정한 것은 본질문제를 오도하기 위한 독선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13. 한국마사회 관장기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대체법을 제정하는 것이 법논리면이나 정부기능 조정 방침에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법의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 총무처장관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부 조직법 본칙에도 없는 사항을 정부조직법 부칙을 개정하여 한국마사회법상 “농림수산부장관”을 “체육부장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현행 한국마사회법의 목적(마사진흥 및 축산발전)과 체육과는 전연관계가 없는 마사회의 지도 감

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부장관의 관장사항인 “축산” 독기관(체육부장관)이 되는바 이는 정부 조직법 제 36 업무를 체육부장관이 관장하게 되는 법이론상 중대한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14. 정부 조직법 제35조의 3규정에 의하면 체육부장관은 “체육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경마는 말의 경주이지 운동경기나 유희, 야외운동등과 같이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사람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체육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경마가 체육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체육부가 경마업무를 관장토록 부처간 기능조정을 한 것은 부당한 논리의 발상이며, 이는 현행 행정 조직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중대한 행정하자입니다.

15. 정부조직법 부칙에서 한국마사회법을 변칙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마사회를 체육부로 이관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정부가 철회(정부 조직법 개정 법률안 부칙 제8조 4항 및 제5항 삭제) 하도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장 여러분의 심찰 있으시기를 청원합니다.

동물약품 안전사용 10대수칙

1.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어본 후 사용한다.
2. 사용설명서에 지정된 가축에만 사용한다.
3. 사용 용량을 반드시 지킨다.
4. 휴약기간은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한다.
5. 사용방법(투약경로)을 반드시 지킨다.
6. 성분이 같은 약을 먹이면서 동시에 주사를 하는 등 중복사용을 하지 않는다.
7. 주사부위와 주사침 등을 알맞게 선택한다.
8. 휴약기간이 되면 사료통, 축사, 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먹인다.
9. 동물약품의 사용내역을 철저히 기록 유지 한다. 이 기록은 시장출하와 치료에도 필요하다.
10.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인근의 진료를 담당하는 수의사 또는 가축위생시험소에 도움을 청한다.